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7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문대림 · 임호선 · 김한규
이병진 · 이원택 · 김 윤
이언주 · 부승찬 · 문금주
위성곤 · 양문석 · 박지원
전종덕 · 최민희 · 서삼석
최혁진 · 김재원 · 전진숙
윤준병 · 허성무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4·3 및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인정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사람

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 4.3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고문 및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

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유혈진압,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상 및 폭력 행위

다. 그 밖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또는 불법 행위 책임자로 확인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으로서 그 책임이 인정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 리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사람 가. 「제주 4·3 사건 진상규 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 주 4.3 사건 발생 과정에 서의 양민학살, 고문 및</u>

② ~ ⑦ (생략)	<u>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u> <u>나. 「5·18민주화운동 등에</u> <u>관한 특별법」에 따른 5·</u> <u>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u> <u>유혈진압, 무고한 시민에</u> <u>대한 살상 및 폭력 행위</u> <u>다. 그 밖에 진실·화해를 위</u> <u>한 과거사 정리 기관의 결</u> <u>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u> <u>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u> <u>한 중대한 인권 침해 또는</u> <u>불법 행위 책임자로 확인</u> <u>된 사람</u> ② ~ ⑦ (현행과 같음)
-------------------	--